

해외건설 촉진법

[시행 2014.2.14] [법률 제12082호, 2013.8.13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·분석 및 시장 전망, 주요국의 해외건설 제도·정책 동향 조사·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3년 8월 13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

◎법률 제12082호
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·분석 및 시장 전망
2.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·정책 동향 조사·분석
3.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
4.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
5.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
6.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
7.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